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7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1.13 시행) 및 「지방자치법시행령」(’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 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의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연구단체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조(정책지원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u></p> <p><u>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의원의 조례 제정 · 개폐, 예산 · 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 조사 · 분석 지원</u> <u>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u> <u>3.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u> <u>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u> <u>5. 의원의 공청회 · 세미나 · 토론회 · 연구단체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u> <u>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 분석 ·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u>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